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강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798

발의연월일: 2024. 9. 9.

발 의 자:이강일·강득구·김남근

김남희 • 민병덕 • 민형배

임미애 · 정성호 · 조계원

허 영·황명선·황운하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2023년 10월부터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따라 하도급 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'하도급대금 연동제'를 도입하여 시행 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상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% 이상을 차지하는 '주요 원재료'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, 원자재값으로 보기 어려운 경비 중 전기·가스요금 등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의 경우에 는 하도급대금의 10% 이상을 차지하게 되더라도 적용대상에서 제외 됨.

하도급대금 중 전기·가스요금 등 에너지비용과 운송료의 비중이 높은 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비용이 급증하더라도 하도급대금 연동제 의 보호를 받지 못해 수급 사업자의 어려움을 구제하지 못한다는 지 적이 제기됨. 또한, 현행법에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인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, 부당한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무효를 확인받기까지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수급사업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는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음.

이에 현행법상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상이 되는 '주요 원재료'를 재료비뿐 아니라 전기·가스요금 등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 등 하도급대금의 10% 이상을 차지하는 비용을 포함하는 '주요 재료비등'으로 개정하고 부당한 특약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도록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6항·제17항 및 제3조제2항3호, 제3조의4제3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6항 중 ""주요 원재료"란"을 ""주요 재료비등"이란"으로, "원재료로서 그 비용이"를 "원재료비 및 경비(「에너지법」 제2조제1호의에너지 사용에 따른 경비 및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조의8에따른 운송비용을 말한다)로서"로, "원재료를"을 "비용을"로 하고, 같은조 제17항 중 "원재료의 가격이"를 "주요 재료비등이"로 한다.
제3조제2항제3호 중 "원재료"를 "재료비등"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제2조 및 제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·갱신되는 하도급 계약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① ~ ⑤ (생 략)	제2조(정의) ① ~ ⑤ (현행과 같
	<u></u> 이
⑥ 이 법에서 <u>"주요 원재료"란</u>	16
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	이란
조・수리・시공 또는 용역수행	
에 사용되는 <u>원재료로서 그 비</u>	<u>원재료비 및</u>
<u>용이</u>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	경비(「에너지법」 제2조제1호
이상인 <u>원재료를</u> 말한다.	의 에너지 사용에 따른 경비
	및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
	제5조의8에 따른 운송비용을
	<u>말한다)로서</u>
	<u>비용을</u>
⑪ 이 법에서 "하도급대금 연	①7
동"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	<u>주요</u> 재료비등
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	<u>o]</u>
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	
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	
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	
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	
한다.	
제3조(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	제3조(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
존) ① (생 략)	존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	②

호의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[「전자서명 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 서명(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 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)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 다]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
- 1. 2. (생략)
- 3.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 적물등의 명칭, 주요 <u>원재료</u>, 조정요건,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
- 4. (생략)
- ③ ~ ⑫ (생 략)

제3조의4(부당한 특약의 금지) ① 저 ·② (생 략)

<신 설>

1.・2. (현행과 같음)
3
재료비
<u> </u>
4. (현행과 같음)
③ ~ ① (현행과 같음)
세3조의4(부당한 특약의 금지) ①
• 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2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
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
한다.